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9. .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8월 28일, 권칠승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8월 2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9차 전체회의(2024.12.6.)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9.23.) 상정·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6차 전체회의(2025.9.24.)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권칠승의원)

최근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를 포함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

다)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의 적용을 받아 법원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송촉진법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허위영상물 등을 반포한 자나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협박·강요한 자는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

딥페이크 등을 활용하여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자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가 불법촬영을 한 자에 비해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 정신적 고통도 덜하다고 보기 어려움.

이에 특례의 적용대상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와 제14조의3을 추가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돕고자 함(안 제25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화실)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명령제도¹⁾

1) 제1심의 가정보호사건 심리절차(「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제62조) 및 제1심의 아동보호사건의 심리절차(「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에도 배상명령 제도가 도입되어 있음.

가. 배상명령제도의 의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 함)에 따른 배상명령제도는 동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1981년 3월 1일부터 도입된 제도로,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임²⁾.

즉 형사범죄의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가해자인 피고인의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임.

이는 형사재판절차에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까지 병합심판함으로써 분쟁의 1회적 해결을 도모하고 손해배상청구를 별도의 민사소송절차에 의할 때 생길 재판의 모순저축 방지에 제도적 취지가 있음³⁾. 특히, 동 제도를 통해 피해자는 민사소송 제기에 따른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갖지 않고 신속하게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음.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제31조(배상명령의 선고 등) ①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3)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24. 3. 15., p. 314.

력이 있고⁴⁾,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⁵⁾, 배상신청인은 그 정본을 이용하여 「민사집행법」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

나. 배상명령 대상

(1) 현행법상 배상명령 대상 범죄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은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해죄, 중상해죄, 특수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상죄, 과실치사상죄, 강간 및 추행죄, 절도 및 강도죄, 사기 및 공갈죄, 횡령 및 배임죄, 손괴죄(제25조제1항제1호), 그리고 위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제25조제1항제3호)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함) 상 특수한 범죄유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함) 상의 특수한 범죄유형(제25조제1항제2호)으로 한정되어 있음.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배상신청) ①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인지(印紙)를 붙이지 아니한다.

② ~ ⑦ (생략)

⑧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배상명령의 선고 등) ② 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명함으로써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主文)에 표시하여야 한다.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적지 아니한다.

③ 배상명령은 가집행(假執行)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제34조(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진 때에는 위에 규정된 죄 및 그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도 배상명령을 할 수 있음(제25조제2항).

< 배상명령⁶⁾ 대상범죄 >

근거법률	범죄유형
형법	- 상해죄(제257조제1항) - 중상해죄(제258조제1항 및 제2항) - 특수상해(제258조의2,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및 제258조제1항·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로 한정) - 상해치사죄(제259조제1항) - 폭행치사상죄(제262조, 존속폭행치사상죄는 제외) - 과실치사상의 죄(제26장) - 강간과 추행의 죄(제32장) - 절도와 강도의 죄(제38장) - 사기와 공갈의 죄(제39장) - 횡령과 배임의 죄(제40장) - 손괴의 죄(제42장) - 위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0조)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제11조) -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제12조)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제13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그 미수죄(제14조 및 제15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제12조)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제14조)

배상명령 대상 범죄를 한정 한 취지는 형사재판의 본질, 신속한 형사재판의 원칙⁷⁾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형사재판은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형벌을 과하는 재판이므로, 모든 범죄에 대하여 배상명령제도가 적용될 경우 형사재판이 지연되어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6) 법원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배상명령을 하는 경우임(제25조제1항).

7) 헌법

제27조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권리가 제한될 수 있고, 손해 확인 및 손해배상액 산정 등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어 형사재판이 민사재판화 될 가능성도 있는바 이를 고려하여 배상명령 대상 범죄를 일정한 범죄로 한정 한 것으로 보임.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배상을 위해 배상명령 대상 범죄는 확대되고 있는데, 「소속법」 제정 당시에는 성범죄가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⁸⁾, 2009년 11월 2일 동법의 개정으로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하여 배상명령이 가능하게 되었고(‘10. 5. 3. 시행⁹⁾), 2012년 1월 17일에는 「성폭력처벌법」 및 「청소년성보호법」의 일부 성범죄가 추가(‘12. 1. 17. 시행)된 바 있음¹⁰⁾.

배상명령 대상에 성범죄가 포함된 것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수반하는 범죄로 피해 이후 법적 절차를 통해 2차 피해를 겪을 수도 있으므로¹¹⁾,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고 형사재판절차에서 동시에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임.

(2) 해외 입법례 및 시사점

배상명령의 대상 범죄에 관한 해외 입법례를 보면, 각국이 제도를

8)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 [시행 1981. 3. 1.] [법률 제3361호, 1981. 1. 29., 제정]**

제25조 (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형법 제257조제1항·제258조제1항 및 제2항·제259조제1항·제262조(尊屬暴行致死傷의 罪를 제외한다)·형법 제26장·제38장 내지 제40장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被害者”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 및 치료비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9) 부 칙 <법률 제9818호, 2009. 11. 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0) 부 칙 <법률 제11163호, 2012. 1. 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1)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반복적인 진술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 등을 입을 수 있음.

도입한 취지에 따라 대상 범죄가 유동적임¹²⁾.

미국에서는 배상명령의 성격이 형사절차에서의 형벌 또는 제재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상범죄에 제한이 없으며¹³⁾, 일본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육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배려라는 점에서 대상범죄를 고의의 범죄행위에 의해 사람을 사상하게 한 죄, 강제외설 및 강간 등의 성범죄, 체포 및 감금의 죄와 더불어 약취 및 인신매매의 죄(이들 죄의 범죄행위를 포함한 죄 및 이들 죄의 미수를 포함)와 관계된 형사피고사건(단 자동차 사고의 경우는 제외)으로 한정하여¹⁴⁾ 우리나라의 배상명령 보다 대상범죄의 범위를 좁게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가 배상명령제도를 도입한 취지 및 현행법 체계 등을 고려하면, 배상명령 대상 범죄는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정확한 손해배상액 산정 등 형사절차와 민사절차가 추구하는 각각의 이념을 훼손하지 않도록 손해 확인 및 손해배상액 산정이 비교적 간단하고 명확한 범죄에 한정하여 인정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¹⁵⁾.

12) 황윤상, 배상명령제도의 문제점과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2012. 4., p. 106.

13) 김정우·고은주, 피해자를 위한 바람직한 배상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1호(통권 제97호, 2014봄), pp. 155~158. / 황윤상, 앞의 글, pp. 103~108.

연방법 Title 18에 언급되는 모든 범죄와 Title 49의 마약범죄를 포함한 일정 범죄에 대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에 대한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함(18 U.S. Code § 3663.Order of restitution)

14) 김정우·고은주, 앞의 글, pp. 159~161. / 황윤상, 앞의 글, pp. 102~108.

15) 우리나라의 배상명령제도는 신속한 소송을 전제로 하는 사상적 배경에서 탄생한 제도이므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판단을 위한 충실한 심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송의 지연(遲延)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5조(배상명령)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배상명령 대상 범죄 확대는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배상을 고려하되 타 범죄와의 형평성 문제, 절차의 지연 등에 따른 피고인의 인권문제, 형사재판부 관사의 업무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로 판단됨.

2.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성폭력처벌법상 범죄 추가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권칠승의원안은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및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규정된 죄¹⁶⁾를 추가하여, 형사공판 절차에서 동 범죄에

1. ~ 3. (생략)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2조(배상신청의 각하)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決定)으로 배상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 동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배상명령) ①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	2. ----- ----- <u>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u> ----- -----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나. 개정안에 대한 검토

현행법은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범죄 중 배상명령 대상 범죄를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제15조(미수범)에 규정된 죄로 한정하고 있는데¹⁷⁾ 개정안은 동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및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규정된 죄를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추가하고 있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는 특정 인물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는 딥페이크¹⁸⁾ 등의 피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3월에 신설되었고¹⁹⁾, 범죄구성요건 중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를 삭제하고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며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

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생략)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8)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혼성어로 인공 지능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임.

19)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이유 참고

· 구입 · 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처벌하는 내용으로 2024년 10월 16일 개정된 바 있음²⁰⁾.

동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은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 등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²¹⁾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 등을 처벌하기 위해 2020년 5월에 신설되었고, 2024년 10월 16일 편집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도 처벌할 수 있게 개정되었음²²⁾.

위 두 범죄 즉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및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규정된 죄를 배상명령 대상 범죄로 추가하는 개정안의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위 두

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1)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이유 참고

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범죄와 관련이 있는 범죄로서 현행법상 배상명령 대상인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규정된 죄²³⁾를 비교할 필요가 있음.

범죄구성요건 및 법정형을 다음의 표와 같이 비교해 보면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및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규정된 죄의 죄질이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규정된 죄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 정신적 고통도 덜하다고 보기 어려움.

특히 허위영상물의 반포가 실제 촬영된 불법 영상물의 반포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024년 10월 16일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 규정된 죄의 법정형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규정된 죄의 법정형과 같도록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범죄구성요건 및 법정형 비교²⁴⁾>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영상물편집등) 사람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촬영물등이용협박)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편집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위 촬영물 등의 반포 등을 한 자, 사후에 그 촬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영상물반포등) 위 편집물 등의 반포 등을 한 자, 사후에 그 편집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촬영물등이용강요) 위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영리목적허위영상물반포등)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편집물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상습(촬영물등이용협박, 촬영물등이용강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또한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및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규정된 죄 등의 디지털 성범죄는 기술발전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 피해 또한 매우 광범위하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낙인을 남길 수 있고 피해자가 피해 이후 법적 절차를 통해 2차 피해도 겪을 수 있어 형사재판절차에서 동

24) 표 안의 () 부분은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찰청예규) 등에 따른 죄명이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을 생략함(예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시에 배상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및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규정된 죄를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추가하는 것은 최근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배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 관계 기관 의견

법원행정처는 성적허위영상물 등과 같은 디지털성범죄의 경우에도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로 규정하여 피해자의 빠른 피해 회복을 돕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안에 대해서는 배상명령 제도 도입의 취지 및 필요성, 성범죄피해자에 대한 빠른 피해회복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 김용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